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1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(단체)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('24.1.9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·친족인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외(안 제21조의2)
- 나.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후보목록 작성을 위해 전국 자연환경훼손지 조사 추가(안 제35조의3제1항제4호)
- 다.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)
- 라.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행절차에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이루어진 경우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(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)

마. 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01.29. ~3.8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
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
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
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
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(鑑
定)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
있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연
경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
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
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1항제4호 중 “녹지등급”을 “식생보전등급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 작성을 위한 자연환경훼손지 조사

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부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·운영업무

7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·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

8.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조치사항 관리

9.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조사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·운영업무(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.)를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1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

2.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

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

2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

3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
5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

6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

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제53조의3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, “2년마다(매 2년)”을 “3년마다(매 3년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중 “700m 이하”를 “700m 미만”으로 한다.

[별표 2] 제1호나목(2)중 “「광업법」 제4조”를 「광업법」 제3조“로 하고,

제2호가목(2)를 삭제하며, 제2호가목(4)의 ”「주택법」 16조“를 「주택법」 제15조”로 한다.

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: 위 표에 따른 개발사업등 중 「경관법」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(鑑定)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경관

	<u>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u> <u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u>
제23조(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3조(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	4. ----- <u>식생보전등급</u>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5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)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”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.	제35조의3(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) ①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

	<u>후보목록 작성을 위한 자연환경훼손지 조사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의2(업무의 위탁)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.	제52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·운영업무
<신 설>	7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·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
<신 설>	8.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사항 관리
<신 설>	9.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조사
<신 설>	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및

	<u>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·운영업무(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에만한다.)를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</u> <u>2.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</u>			<u>국립공원공단</u> <u>2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</u> <u>3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</u> <u>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</u> <u>5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</u> <u>6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</u> <u>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</u>		<u><신 설></u> 제5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	제5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2023년 1월 1일----- --- 3년마다(매 3년)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24